

개별국가 Crypto 규제 비교: 한국, 미국, 유럽

Index

- 02 I. 규제체계 비교표
- 05 II. 한국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국내 정무회의 회의록을 중심으로
- 12 III. 미국 규제: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RFIA)
 - 디지털 자산 분류 및 거래소 규제를 중심으로
- 19 IV. 유럽 규제: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 토큰 생애주기 & 사업자 규제를 중심으로

I. 규제체계 비교표

분류		미국	유럽	한국
공통 프로세스	Crypto 법령 적용 프로세스	1. 증권형 여부 우선 판단 2. 증권에 속하지 아니한 Token/Coin에 대해 관련 법령의 적용		
증권형 토큰 규제	증권법령	Securities Act 1933 Securities exchange Act 1934	MiFID II - 금융상품법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MAR - 규제(권고) (Market Abuse Regulatio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 1. 1. 시행)
	증권의 범위	부분 포괄적 (Investment Contract)	부분 포괄적 (MiFID II에 열거된 내용)	부분 포괄적 (자시법 제 4조 2항 6호 투자계약증권)
	정부기관 개입수준	적극 (규제 관할기구 논쟁) CFTC. v. SEC.	연합 단위에서 적극 (개별 국가별 차이 有)	소극 (법적 근거 및 관할기구 논쟁)
Crypto 규제	Crypto 법령 (신설)	RFIA ¹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MiCa ² (권고)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assets) (2024년 6월 시행 확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3. 4. 25.) (기 입안 19건 대안반영 폐기) ³
	명칭	Digital Asset (디지털 자산)	Crypto-Asset (암호자산)	가상자산
	Crypto의 분류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부수자산 (Ancillary Asset)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Payment Stablecoin)	유틸리티토큰 (Utility Token) 자산준거토큰 (Asset Referenced Token) 전자화폐토큰 (E-money Token)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⁴ (CBDC 제외)
	유관 사업자 분류	디지털자산 거래소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부수자산 발행자	암호자산발행자 등 7종	가상자산업자

1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4356/text>

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0PC0593>

3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A1O0O5E0K6X1U1B3T2Y5U0V1T5Z0

4 환금성 없는 전자증표, 게임에서 취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선불지급수단,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은 제외

국가별 Crypto 분류 방법 비교

국가	내용
<p>미국 (Digital Asset)</p>	<p>(1차 테스트) Security Token 판단 Howey Test 적용 후, Howey Test 적용 미대상 토큰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urity Token v. "Virtual Currency", "Ancillary Asset", "Payment Stablecoin" - Security Token의 경우 "SEC 규제 적용" (증권과 준하는 의무 부여) <p>(2차 테스트) Digital Asset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cillary Asset: Howey Test 및 이하 테스트를 거친 것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 주체의 부채 또는 지분이 아닐 것. 2. 특정 주체의 청산권이 아닐 것. 3. 특정 주체의 이자 또는 배당금 지급에 대한 권리가 아닐 것. 4. 타 주체의 오롯한 경영/관리 노력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권리가 아닐 것. 5. 위 열거한 사항 외 특정 주체로부터 발생하는 부수적인 이익이 아닐 것.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rtual Curr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의 매개", "가치의 저장", "가치의 단위" 기능을 수행 - 법화가 아니며, 금융상품에서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것 - Payment Stableco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화 혹은 변동성이 낮은 자산을 회사의 담보 보유하고 있으며 발행된 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닌 Stablecoin. ※ 예금취급기관이 발행한 Payment Stablecoin은 SEC와 CFTC의 규제대상에서 벗어남으로 CBDC는 규정에서 예외라고 봄이 타당 (FedNow, The ClearingHouse) ※ NFT 명시적으로 배제함
<p>유럽 (Crypto Asset)</p>	<p>(가치체계) Crypto 규제는 "기술 중립성", "환경보호", "탈법적 행위방지" 등의 가치를 만족하여야 함.</p> <p>(1차 테스트) Directive 2014/65/EU "제2조 1항 3호" 및 "제4조 1항 15호"에 따른 "증권성 여부" 판단</p> <p>(2차 테스트) 발행자의 허가 없이 이전 & 무한분할 가능 여부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틸리티토큰: 금융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업 목적의 토큰 - 자산준거토큰: 두개 이상의 법정화폐나 상품을 담보로 발행하는 토큰 - 전자화폐토큰: 신용기관이 발행하는 전자화폐 <p>※ CBDC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음.</p> <p>※ NFT 명시적으로 배제함.</p>
<p>한국 (가상자산)</p>	<p>(정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금법상 규정된 가상자산 개념을 인용하여 가상자산의 범위를 "분산원장을 사용하는 전자적 증표로 제한하지 않음." →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한" 등의 문언이 없으므로 규정하는 범위는 Crypto 보다 넓다고 보아야 타당 - 단, NFT의 경우에는 발행양태에 따라 특금법 제2조 3항에 따른 제외규정에 열거된 항목들에 해당할 수 있음. (NFT 배제는 아니나 일부 NFT는 포함될 수 있음.) <p>(입법안) 2단계에 걸친 규제안 예정 (현재 이용자 보호 목적의 1단계 심사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DC 및 명시적으로 배제 (CBDC가 특금법상 제외규정 적용가능성 낮으므로) - 그 외 Crypto 자체에 대한 규제안은 없음. -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금융위 지속

국가별 규제기관 비교

국가	내용
미국 (Digital Ass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 Security Token & Ancillary Asset 감독 - CFTC: Ancillary Asset 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Digital Asset 및 거래소, 사업자 감독
유럽 (Crypto Ass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B (유럽중앙은행): 유틸리티, 자산준거, 전자화폐토큰 조사 감독 - ESMA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유틸리티, 자산준거, 전자화폐토큰 및 암호자산 사업자 조사 감독 - 관할국가 담당기구: 국내에서 발행되는 토큰, 국내에서 운영하는 암호자산 사업자 인허가 및 조사 감독
한국 (가상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주 감독기구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로부터 감독사무 일부 위탁 -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자료 요구권

II. 한국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쟁점사항	'21년 11월 17일 정무회의	'23년 3월 28일 정무회의	'23년 4월 25일 정무회의 (확정안)
단계별 입법 여부 및 별도 제정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산업에 대한 "일반 규제 배제 합의" - 가상자산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독립되어 입법하되,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제한적 입법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입법 방식으로 합의 (윤창현 위원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거래법,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처벌 ▪ 2단계: 영업행위 일반, 상장, 발행 (Life Cycle) 	
가상자산 용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금법에 가상자산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통일성을 위해 가상자산의 개념 지속사용" - 특금법상 가상자산 개념에 DEFI, NFT, 일부 유틸리티 토큰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법상 별도 규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금법상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므로 일관성을 위해 "가상자산 개념 지속 사용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금법상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므로 일관성을 위해 "가상자산 개념 지속 사용 합의"
CBDC 제외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DC는 법정화폐의 발행방법에 불과하므로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이용우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오해가능성 있음. (금융위 김소영) - 2단계 입법으로 가닥을 잡았으므로 2단계 시점에 입법하면 됨. (윤창현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CBDC의 경우에는 가상자산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시 문구 포함"
거래소 기록 보존 쟁점	쟁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 및 증여세" 제척기간을 고려하여 15년 보관의무 (이용우 위원)
집단 소송 도입	쟁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있으나 가상자산 관련 집단 소송법은 없으므로 이에 신설 (오기형 위원)
처벌 관련 규정 (불공정거래)	쟁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공개정보이용 - 시세조종 - 정보이용형 부정거래 - 시세관여형 부정거래 ● 처벌: 과징금 및 손해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합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 거래소 내 시세조작 등 이상거래 탐지 의무 - DAXA를 경유한 "내부통제제도"를 통한 통제 (코인원 등)
위원회 설립여부	쟁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조사단 33명, 금융감독원 조사 부문 77명 시장감시위원회 120명을 통한 불공정행위 규율 난점 존재 (수석위원 이용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 정책자문, 권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가상자산정책자문위원회 설립 (2단계 대비) (이용우 위원)

한국은행. (2022. 12.).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p.95

가상자산 및 전자금융 관련 의원입법안 진입규제

	민병덕	민형배	김은혜	윤창현	권은희	양경숙
법안	가상자산 특별법 제정안					
용어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가상자산	가상자산	가상자산
인가/등록 기관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산하(7명)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영업유형	디지털자산금융사업	디지털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거래업	가상자산업
	가. 메도-메수 나. 디지털자산으로 타 자산을 매매 다. 디지털자산 교환 라. 보관 또는 관리 마. 가족-나속 중개, 알선 대행 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 메도-메수 나. 디지털자산 교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천 라. 보관 또는 관리 마. 가족-나속 중개, 알선 대행 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 메도-메수 나. 가상자산 교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천 라. 보관 또는 관리 마. 가족-나속 중개, 알선 대행 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 발행 나. 메도-메수 다. 가상자산 교환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천 마. 보관 또는 관리 바. 가족-나속 중개, 알선 대행 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의 매매를 위한 시장 개설 및 운영	가. 발행 나. 매매, 교환 등을 중개, 알선 다. 보관, 관리 및 이천 서비스 등 마.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진입규제	인가	-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거래업	가상자산업
	등록	디지털자산 발행	가상자산 발행	가상자산 발행	-	-
	신고	-	-	-	-	-
자본금 요건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가. 가상자산거래업 3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가상자산보관관리업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 : 2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가상자산발행업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김병욱	이용우	박용진	강민국	배진교	정희용
법안	가상자산 특별법 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용어	가상자산	가상자산	가상통화	가상자산	가상자산	가상자산
인가/등록 기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영업유형	가상자산업	가상자산사업	가상통화취급업	가상자산취급업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업
	가. 메도-메수 나. 가상자산 교환 다. 고객의 요청에 따른 가상자산 이천 라. 보관 또는 관리 마. 발행 바. 가족-나속 중개, 알선 대행 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 메도, 메수 나. 가상자산 교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천 라. 보관 또는 관리 마. 가족-나속 중개, 알선 대행 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 판매-구입판매 대행, 구입 권유 포함 나. 가상통화의 매매를 위한 시장 개설, 운영 다. 매매 중개, 알선 라. 발행, 가상통화의 생성, 채제 또는 거래제계를 만드는 행위 마. 보관-관리	가. 발행 나. 메도-메수 다. 가상자산 교환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천 마. 매매, 교환 등의 중개, 알선 대행 바. 보관 또는 관리 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 메도-메수 나. 가상자산 교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천 라. 보관 또는 관리 마. 가족-나속 중개, 알선 대행 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 발행 나. 메도-메수 다. 가상자산 교환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천 마. 보관 또는 관리 바. 가족-나속 중개, 알선 대행 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진입규제	인가	가상자산거래업	가상통화취급업	가상자산취급업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지갑업 외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가상자산거래업 가상자산보관관리업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	-	가상자산발행업 가상자산관리업	-	-
	신고	일반적 가상자산업	-	-	-	가상자산지갑업
자본금 요건	가상자산거래업 및 가상자산보관관리업 :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가. 가상자산거래업 :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나. 보관관리업,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 :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가. 가상자산취급업 :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나. 가상자산발행업, 가상자산관리업 :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제391회 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1년 11월 17일

■ 쟁점1)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을 자본시장법 개정, 전금법, 특금법 개정 혹은 별도의 제정법 중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 1설: 기존 법안의 개정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정법이 효과적이다. (소위원장 김영욱)
- 2설: 현재 용어부터 통일이 안 된 상태이므로, 제정법 방향은 갖추되 이후 국외 입법추진과 발 맞추어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 (홍성국 위원)
- 금융위원회 관점: 제정법 중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제일 시급하다.
- 독립된 법으로 입법하되, 산업 방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입법하는 것으로 합의

■ 쟁점2) 가상자산과 디지털자산 중 어떤 개념을 사용할 것인가?

- 1설: 특금법상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사용함이 옳다. (수석위원 이용준)
- 보충설)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범위에 DEFI/ 일부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NFT가 포섭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법상 별도 정의 필요 (금융위 도규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호 ('21. 12. 28. 시행)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채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일부 유틸리티 토큰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게임을 통해 확보한 NFT 토큰/ 유틸리티 토큰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증권형 토큰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증권형 토큰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증권형 토큰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⁵으로 정하는 것

※ 3호의 내용에서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하여 CBDC의 명시적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상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결제규제)

■ 쟁점3) 가상자산에 CBDC의 포함 여부?

- 특금법의 가상자산의 정의상 CBDC 역시 가상자산이 되나, 입법 시점에 한국은행에서 CBDC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요구됨. (이용우 위원, 금융위 도규상)

제391회 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1년 11월 23일

■ 대체거래소 K VX(Korea Virtual Asset Exchange) 설립의 건

- 개별 거래소를 증권사와 같은 지위에 두고, K VX에 통합하여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제안 (이용우 위원)
 - ◆ 근거) 특정 몇 개 거래소 업체 중심으로 거래량이 형성되고 있음.

제401회 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2년 12월 26일

■ 쟁점) 가상자산 사업법이 시간이 걸리므로, '23년 1월로 지연. (박용진 위원, 김종민 위원장)

제403회 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 23년 2월 27일

■ 쟁점) 시간제한으로 가상자산까지의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 같다.

제404회 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3년 3월 28일

■ 쟁점1) 가상자산 입법 단계화

- 1단계: 거래법,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윤창현 위원, 우선채택)
- 2단계: 영업행위, 상장, 발행
- 윤창현 의원 2단계 입법 제안 통과

■ 쟁점2) 가상자산 용어 정의

- 특금법⁶ 상 가상자산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 지속 사용 (금융위 김소영)

6 <https://www.law.go.kr/법령/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 쟁점3)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CBDC를 제외하는지 여부

- 1설: CBDC를 관련법령의 규정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을 경우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 (금융위 김소영)
- 2설: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서 가상자산의 정의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BDC가 포함될 수 있음. 따라서, 추후 산업의 방향을 보고 CBDC에 대한 논의를 해도 문제없음. (김한규 위원)
- 추후 논의

■ 쟁점4)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 감독 등 주무기관

- 1설: 가상자산 보호에 대한 책임주체는 금융위원회이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산하에 가상자산 관련 감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검사 감독 과정에서 금감원으로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윤창현, 이용우 위원)
- 2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정책을 제안하는 부서이므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정책을 금융위원회가 주관할 경우 1)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모습과 2)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기관으로 보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윤한홍 위원)
※ 추가적으로, 감독기구 증설을 위한 예산 문제 제기 (윤한홍 의원 → 금융위원회)
- 보충) 가상자산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므로, 통화신용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에 조사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한규 위원)

■ 쟁점5)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기관 여부

- 1설: 처음부터 금융기관이라고 인정하고 법을 만드는 것이 맞다. (윤한홍 위원)
- 2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자본시장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여 추진하는 이유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기관과 차별화된 조치를 수행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아님을 확인하려는 작업 (윤창현 위원, 이용우 위원)
※ 금융감독원에 의한 감독을 받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 보일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 소관이 옳다. (윤창현 위원)

■ 쟁점6) 거래소 거래기록 보존의무

- 훼손가능한 사업자의 거래소 장부기록 보존 의무
- 추후 논의

제405회 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3년 4월 25일

■ 쟁점1) 법안에 '국민경제 발전' 구절이 들어가야 하는지 여부

- 2단계 입법으로 합의되었고, 1단계는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배제되어도 타당하다.

■ 쟁점2) 가상자산 범위에서 CBDC를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 1설: 국제적으로 CBDC와 가상자산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현재 CBDC가 가상자산업법의 규율 대상이 아님은 맞으나, 향후 CBDC의 적용 방향에 대해서 아직 모르므로 적용 방향이 확정될 경우 한국은행법에 추가하거나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금융위 김소영)

※ CBDC는 화폐이므로 가상자산이 아니다.

- 2설: CBDC가 명시적으로 가상자산 부분에서 제외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이후 CBDC 프로젝트에서 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한국은행 이종렬)

- CBDC 명시 배제로 확정

■ 쟁점3) 법상 가상자산의 범위에 증권성 가상자산을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

- 가상자산은 이미 자본시장법이 우선 적용되고 있으므로, 증권성 가상자산에 대해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실익이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음. (금융위 김소영)

■ 쟁점4)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기록 생성 보관의무 기간

- 1설: 15년 - 상속세 증여세의 제척기한을 고려 (이용우 위원)
- 2설: 5년 - 원안의 입장 (법인세 관련 시효 고려, 오기형 위원)
- 15년으로 확정

■ 쟁점5)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집단소송 도입 여부

-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을 위해 집단소송 확대가 필요하므로 무리 없음.

■ 쟁점6) 부정거래 유형관련 처벌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의 건

- 죄형법정주의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상근 위원, 금융위 김소영)

■ 행정기구와 분리된 자문기구 설치⁷에 대한 건

- 1설: 금융위 금감원과 독립된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설립하여 사무 지원
- 2설: 금융위원회 하부에 정책자문 위원회 설립
- 2설에 따라 정책자문 위원회 설립으로 확정
가상자산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 심의 의결, 정책 권고, 제도 개선

※ 자문위원회는 사무기구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를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III. 미국: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RFIA)

Summary

Digital Asset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입법안			
법안명칭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 (RFIA)	디지털 상품 거래법 (DCEA)	디지털자산 시장 및 투자자 보호법 (MSIPA)
영문명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⁸	Digital Commodity Exchange Act ⁹	Digital Asset Market Structure and Investor Protection Act ¹⁰
제안일	'22. 6. 7.	'22. 4. 28.	'21. 7. 28.
제안자	상원의원 루미스(공화당) & 질리 브랜드(민주당)	하원의원 톰슨(민주당)	하원의원 베이어 (Beyer)
디지털자산 규제기관	CFTC	증권형 외 디지털자산	증권형 외 디지털자산
	SEC	증권	증권
디지털자산 거래소 규제 기관	CFTC 등록 방식 단, 의무사항 아님. ¹¹ (기존 상품거래소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CFTC 등록 방식 단, 의무사항 아님. (기존 상품거래소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
거래 가능 상품	현물 (파생상품 불가) ¹²	현물	-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업자 ¹³	고객 서비스 주요조건 공시	CFTC 자율등록 & 공시의무	-

※ 입법안 세건 중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RFIA)이 규정하는 범위가 제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파트에서는 RFIA”만을 다루는 것으로 한다.

8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4356>

9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7614>

10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4741/text>

11 SEC. 404. (a) In General.—The Commodity Exchange Act (7 U.S.C. 1 et seq.) is amended by inserting after section 5h the following:

12 (3) PROHIBITION ON TRADING DERIVATIVES PRODUCTS.—Registration as a digital asset exchange shall not permit a trading facility to offer any contract of sale of a commodity for future delivery, option, or swap for trading without also being registered as a designated contract market or swap execution facility. (SEC. 5i. b. 3.)

13 선물거래법을 따라가므로 FTM(Future Commission Merchant)라 지칭한다.

History

- (’21. 7. 28.) 디지털자산 시장 및 투자자 보호법 입안 (Digital Asset Market Structure and Investor Protection Act, MSIPA, Beyer, 민주당)
- (’22. 4. 28.) 디지털 상품거래법 입안 (Digital Commodity Exchange Act, DCEA, Thomson, 민주당)
- (’22. 3. 9.) 바이든 행정부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전략 수립 촉구
- (’22. 9. 16.) Terra-Luna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백악관에 의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목적과 정책적 권고사항을 포함한 프레임워크 발표¹⁴

※ ’22. 11. 1. 프레임워크의 제안사항

(디지털 자산의 경제적 효과) 미국의 기존 금융시스템은 개인간 거래과정에서 수표 및 우편환 등을 자주 사용하여 이에 따른 비효율성이 높음.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자산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판단

(문제인식)

- 1) **재무안정성**: 기존 금융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Stablecoin은 적절한 규제가 없을 경우 Terra-Luna 사태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2) **미등록증권판매**: Digital Asset의 판매 과정에서 증권을 등록하여 공시 등 적절한 소비자 보호조치가 있어야 하나, 이를 미비한 프로젝트 다수 식별
- 3) **사기를 비롯한 범죄발생**: Digital Asset사기/기망행위를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갈취하거나, 범죄자금의 세탁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제안해결책)

1) 재무안정성 (’21. 11. 1.)

- (안정성 확보) 발행자의 회사수준에 맞는 적절한 예금(수탁)기관 이용
- (연방감독) 커스터디 의무 사용, 연방감독 의무 부여 등 지불시스템 리스크 감소
- (중양화 방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회사와의 제휴 제한 (자금 유용 방지 목적)

2) 미등록증권판매

- SEC와 CFTC의 디지털 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지시

3) 사기 범죄 발생

- CFPB, FTC에 의한 디지털 자산 소비자 쟁점 사항 모니터링
- KYC/AML 기준을 강화하여 디지털 자산의 범죄 행위 연루 방지

4) 대체결제 시스템 운영

- (FedNow) the Clearinghouse를 이용하여, 미 전역에서 낮은 수수료 및 지연으로 은행간 결제 연계 강화
- (CBDC) 정부주도의 효율적 지급결제 수단 제안

¹⁴ FACT SHEET: White House Releases First-Ever Comprehensive Framework for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22. 9. 16.)

RFIA(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Chapter 1. 디지털자산 정의 및 분류

대분류	중분류	내용
디지털 자산	공통사항	“분산원장” 혹은 “유사한 기술”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경제적 권리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Section 5103”에 기재된 법정화폐의 종류가 아니며, “교환의 매개”, “가치의 단위”, “가치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부수자산 (Ancillary Asset)	Securities Act of 1933 Section 2(a)(1)에 따라, “투자계약의 거래구조” 형태로 공개 또는 판매된, “무형의”, “대체가능한” 자산 ※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시규제권한을 가짐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Payment Stablecoin)	(A, Backed) 미국 달러와 1:1 대응되는 것 (B, Legal tender) Section 5103에 따라 정의되어 있거나, 혹은 외국 특정 국가의 법령에 근거한 것 (C, Issuance) 특정한 사업체에 의해 발행된 것 (D, Redemption) (A)에 따른 발행자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것. (E, F, Collateral) 1개 또는 그 이상의 금융상품을 담보로 발행된 것으로 거래의 매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증권형 토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주체의 부채 또는 지분이 아닐 것. - 특정 주체의 청산권 - 특정 주체의 이자 또는 배당금 지급에 대한 권리 - 타 주체의 오롯한 경영/관리 노력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권리 - 상기 열거한 사항 외 특정 주체로부터 발생하는 부수적인 이익 	디지털 자산 중 좌측을 만족하는 경우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

디지털 자산의 정의 (Section 9801, (2))

(정의) 암호로 보안되는 “분산원장(DTL)” 혹은 “유사한 기술(Similar analogue)”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경제적 권리 및 소유권, 이용권 등 기타 그 밖의 권리 등

- Commodity Exchange Act Section 2 (c) (2) (F)에 따른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및 “부수자산(Ancillary Asset)”
- 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of 2000 제7조에 따른 “지급 결제형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 정의를 만족하는 “증권” 혹은 “상품” 일체

Virtual Currency (Section 9801, (10))

- “교환의 매개”, “가치의 단위”, “가치의 저장” 세가지 기능 중 일부 또는 전체를 만족하는 것
- Section 5103¹⁵에 기재된 “법정화폐의 종류가 아닐 것.”
- 담보 자산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지 않을 것

Ancillary Asset (Section 9801, SEC. 41.)

(정의) Securities Act of 1933 Section 2(a)(1)에 따라, 투자계약의 형태로 공개 또는 판매된, “무형의”, “대체가능한(fungible)” 자산

Payment Stablecoin (Section 9801, (5))

- (A, Backed) 미국 달러와 1:1 대응되는 것
- (B, Legal tender) Section 5103에 따라 정의되어 있거나, 혹은 외국 특정 국가의 법령에 근거한 것
- (C, Issuance) 특정한 사업체에 의해 발행된 것
- (D, Redemption) (A)에 따른 발행자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것
- (E, F, Collateral) 1개 또는 그 이상의 금융상품을 담보로 발행된 것으로 거래의 매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 단, 여기서 발행의 담보에는 디지털 자산을 제외한다.

Digital Asset 제외 조건(SEC. 41, 401)

- 특정 주체의 부채 또는 지분이 아닐 것.
(A debt or equity interest in that entity.)
- 특정 주체의 청산권
(Liquidation rights with respect to that entity.)
- 특정 주체의 이자 또는 배당금 지급에 대한 권리
(An entitlement to an interest or dividend payment from that entity.)
- 타 주체의 오롯한 경영/관리 노력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권리
(A Profit or revenue share in that entity derived solely from the entrepreneurial or managerial efforts or others.)
- 상기 열거한 사항 외 특정 주체로부터 발생하는 부수적인 이익
(Any other financial interest in that entity.)

※ Howey test를 만족하는 분산원장 기반 권리는 Digital Asset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SEC의 관할로 봄.

¹⁵ United States coins and currency (including Federal reserve notes and circulating notes of Federal reserve banks and national banks) are legal tender for all debts, public charges, taxes, and dues. Foreign gold or silver coins are not legal tender for debts. (31 U.S Code Section 5103 – Legal Tender)

별론)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 법인격 없는 사단(disregarded Entity)가 아닌 사업체 (Business Entity)로 간주되어야 함.
- 비즈니스, 상업, 자산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의 집단행위를 Smart Contract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조직 거버넌스가 분산되어 달성되고,
- 다음의 활동은 DAO의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음.
 - Mining & Staking
 - 자선 목적의 자금 모집

Chapter 2. 디지털자산 생애주기(Life Cycle)

■ 디지털자산의 발행 & 운영

Virtual Currency: RFIA에 별도로 정함 없음.

Ancillary Asset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분류	내용
내국인 사모 발행	Ancillary Asset 발행과 동일
외국인 사모 발행	- 외국인인 발행한 것 -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50% 이상의 의결권이 미국인에게 있을 것. 2. 주요 경영자 혹은 발행자가 미국인일 것. 3. 발행자의 사업이 미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을 것.

Payment Stablecoin

발행(Issuance) (SEC. 722.)

(담보) Payment Stablecoin을 발행할 경우 유동성 높은 자산을 통한 담보가 되어 있어야 함.
 (담보물건) 법화, 요구불예금, 연방준비은행 잔액, 증권, 보험, 고품질의 유동자산
 (담보기준) 발행 Stablecoin의 액면가에 대해 100% 이상이어야 함.

공시(Disclosures)

(내역공시) 매월 말 Payment Stablecoin을 뒷받침하는 “자산의 내역 및 그 가액”, “기 발행 Stablecoin 숫자를 **익월 10영업일 이내**”에 일반에 공개하여야 하고.
 (보고) 자산 내역, 기 발행 Stablecoin 수를 연방 또는 주 은행감독당국에 동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상환권

- (우선변제권) Payment Stablecoin 권리자는 해당 기관의 다른 모든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한이 있다.

Chapter 3. 디지털자산 사업자 규제

Commodity Exchange Act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CFTC는 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of 2000 Section 6d, 12e, 403에 따라 디지털 자산 뿐만 아니라 이를 거래하는 거래소에 대한 포괄적인 관할권을 가짐.

단, NFT(Non fungible Token)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갖지 않음.¹⁶

디지털 자산 서비스 공급자(Person Who Provides Digital Asset Services, Section 9801, (6))라 함은?

1. Digital asset intermediary
2. Commodity Exchange Act 1a 에 따른 금융기관
3. 연방 또는 주 현장 면허 등록 또는 그 밖의 승인에 따라 디지털자산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4. 법률에 의해 디지털 자산 활동을 위해 권한을 보유하도록 요구되는 자

디지털자산 사업자란 다음의 규정에 따른 라이선스를 가졌거나,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 the Commodity Exchange Act
- the Securities Act of 1933
- the Corporation of Foreign Bondholders Act, 1933
- the Trust Indenture Act of 1939
-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 the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¹⁶ FUNGIBILITY REQUIREMENT.—The Commission shall only exercise jurisdiction over an agreement, contract, or transaction involving a contract of sale of a digital asset that is fungible, which shall not include digital collectibles and other unique digital assets.

디지털자산거래소 관련 규제 (SEC. 404. (5i))

- **시세조종에 취약한 디지털자산 거래 금지**
(3) DIGITAL ASSETS NOT READILY SUSCEPTIBLE TO MANIPULATION

- **고객자산의 분리의무**
(4-A) A registered digital asset exchange shall establish standards and procedures that are designed to protect and ensure the safety of customer money, assets, and property

- **재무건전성 요건**
(A) IN GENERAL.—A registered digital asset exchange shall have adequate financial, operational, and managerial resources,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to discharge each responsibility of the registered digital asset exchange.

- **지배구조 적정성**
“(13) GOVERNANCE FITNESS STANDARDS.—
“(A) GOVERNANCE ARRANGEMENTS.—A registered digital asset exchange shall establish governance arrangements that are transparent to fulfill public interest requirements.

- **고객자산 예치의무**
“(f) Custodian.—A registered digital asset exchange shall deposit with an entity described in section 4d(i)(1)(B) each digital asset that is—
“(1) the property of a customer of the registered digital asset exchange;
“(2) required to be held by the registered digital asset exchange under subsection (c)(2) or (d)(12); or
“(3) otherwise required by the Commission to be so held to reasonably protect customers or promote the public interest

- **화폐교환업자 등록의무 (SEC 404, b, (3))**
“(3) ADDITIONAL REGISTRATION.—A registered digital asset exchange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as a money services business.

IV. 유럽: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Summary

MiCa 적용 대상 토큰 분류표				
법안명칭	유틸리티토큰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성격	비금융목적/사업목적 토큰	두개 이상의 법정화폐나 상품을 담보로 발행한 토큰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토큰(신용기관 발행)	
관할기관	소속 국가	소속국가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소속국가 유럽중앙은행	
발행	공통 발행사항	1. (주체) 인가 요청자는 유럽 내 본점 또는 지점을 위치한 법인 이어야 함. ※ 단, 발행자는 법인 또는 자연인일 수 있음. 2. (기술) 분산원장을 사용하여야 함. 3. (KYC/AML)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4. (조세) 지정된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두지 말아야 함.		
	백서 발행 의무	있음	있음	있음
	인가 의무	있음	있음	있음
	백서 & 인가 예외	1. 기 발행된 경우 2. 발행자 대상 사용만 가능 (발행자 외 교환 불가) 3. 공개 이후 1,000,000 미만 모금	1. 신용기관 인가를 받은 경우 2. 12개월 일 가중평균 5,000,000 미만 모금	1. 신용기관 인가를 받은 경우 2. 전자화폐 요건 충족 시 3. 12개월 일 가중평균 5,000,000 유로 미만 모금
	인가 효과	공통	1. 암호자산 공개(Initial Offering) 2. 암호자산거래소 거래 승인	
		개별	- 발행일로부터 12개월 모집가능 - 공개기한 종료 14일 전 결과 공개	지속 모집 가능 지속 모집가능
적용	공통 운영사항	1. (소비자 보호) 발행 이후 소비자 보호 법률의 적용 2. (손해배상) 백서 기재사항과 다른 운영으로 인한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발생 - 백서상 면책 기재사항은 유효하지 않음.		
	개별 운영사항	백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영업일 7일 전" 웹사이트 및 관계당국에 통지	1. 발행자 및 암호자산사업자에 의해 이자가 지급되어서는 안 됨. 2. 중요 감독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음. 3. 준비자산을 변동성이 낮은 안전자산 위주로 운영하여야 함.	공시 의무 (3개월) 지배구조 (20% 이상) 커스터디 사용 (별개 업체) 자산 운용방침 중앙기관 보고 3개 조건 만족시 중요 토큰 보유자의 상환요구시 2영업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함.
중단	사업자에 준하는 사업 중단	- 인가승인 요건 미충족 - 불법행위시 - 도산법에 따른 업무축소 - 운영중단의 결정 - 통화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신용기관 인가 상실 - Directive 2009/110/EC	

1) 증권형 토큰의 경우, 분산원장을 사용한 금융투자상품으로 금융법 규제를 받으므로 기재하지 않음.

2) 탈중앙화 된 토큰이나 증권성을 가지지 않은 NFT는 본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음.

MiCa 적용대상 사업자 분류표

	암호자산 서비스 유형	최소 자본금
주요감독기구	1차: 관계당국 2차: 유럽증권시장감독청	
분류 1	제3자 대행 암호자산 거래	50,000유로
	암호자산 자문 제공	
	암호자산 사모발행	
분류 2	커스터디 서비스	125,000유로
분류 3	암호자산과 법화 간 교환	150,000유로
	암호자산간 교환	
	암호자산거래 플랫폼	

MiCa에 따른 금융당국 규제권한

	(개별국가) 관계당국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유럽중앙은행
유틸리티토큰	(사후관리) 검사, 제재	모니터링	모니터링
자산준거토큰	인가, 검사, 제재	인가 평가 등 사무 수행	인가 거부 인가 취소 요구 감시
암호자산서비스		모니터링	모니터링
전자화폐토큰	검사, 제재	모니터링	인가, 감독권한

Chapter 1. 암호자산 규제 개념체계

■ MiCa의 암호자산(Crypto Asset) 규제 개념체계

→ 기술 중립성, 환경 보호, 불법행위 최소화

- 기술 중립성

- ▶ “(중략)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럽연합 차원의 **법률이 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고 불균형적인 규제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아야 함.**” (§5)

- 환경 보호

- ▶ “(중략) 유럽집행위원회는 에너지 소비, 탄소 배출, 실물 자원의 고갈, 전력낭비 및 인센티브 구조 등을 감안하여 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합의 메커니즘이 어떤 것인지를 식별해야 한다. **지속 불가능한 합의 메커니즘은 소규모로만 적용**되어야 한다.” (§5a)

- 탈법적 수단 최소화

- ▶ “(중략) **시장조작, 금융범죄 등 암호자산 유통시장의 시장무결성에 중대한 위협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회원국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유럽연합의 법률 포괄 범위를 벗어나는 암호자산에 대하여 그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특칙을 마련한 바 있다.

Chapter 2. 암호자산 정의 및 분류

■ 암호자산의 정의 (§2)

- 암호자산은 금융분야(In Finance)에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적용한 주요 사례 중 하나로, 암호자산은 시장 참가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상당한 잠재적 편익을 줄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시임.
- 암호자산은 일종의 **“인지된 가치 또는 내재가치”**로서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이다.

■ 암호자산의 분류

- ▶ (공통) 본 법의 적용은 **“발행자의 허가 없이”, “이전 가능”**한 암호자산에 적용됨.

▶ 증권형 암호자산(§3)

-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함.
- Directive 2014/65/EU 제4조 1항 제15호¹⁷ 정의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 Directive 2014/65/EU 제2조 1항 제3호 정의에 따른 예금
- 만일 증권형 암호자산에 속할 경우 각 국가별 MiFID II의 적용을 받고, 공통된 MAR(Market Abuse Regulation)의 적용을 받음.

▶ 유틸리티토큰 (Utility Token, §9)

-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함.
- 디지털플랫폼 및 디지털서비스 운영에만 사용하는 “비금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투자 목적의 공개를 제외하고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자산준거토큰 (Asset-referenced Token, §9)

-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함.
- 2개 이상의 법정화폐 또는 상품을 담보로 발행한 토큰
- 단, 다른 가치나 권리에 준거함으로써 가치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함.
- 단, 자산준거토큰은 “알고리즘 베이스 스테이블코인”과는 다른 개념 (§26)
- ※ 하나 또는 복수의 자산에 준거하여 가치 안정을 도모하지 않는 암호자산의 경우

¹⁷ ‘financial instrument’ means those instruments specified in Section C of Annex I;

(1) Transferable securities;

(2) Money-market instruments;

(3) Units in collective investment undertakings;

(4) Options, futures, swaps, forward rate agreements and any other derivative contracts relating to securities, currencies, interest rates or yields, emission allowances or other derivatives instruments, financial indices or financial measures which may be settled physically or in cash;

(5) Options, futures, swaps, forwards and any other derivative contracts relating to commodities that must be settled in cash or may be settled in cash at the option of one of the parties other than by reason of default or other termination event;

(6) Options, futures, swaps, and any other derivative contract relating to commodities that can be physically settled provided that they are traded on a regulated market, a MTF, or an OTF, except for wholesale energy products traded on an OTF that must be physically settled;

(7) Options, futures, swaps, forwards and any other derivative contracts relating to commodities, that can be physically settled not otherwise mentioned in point 6 of this Section and not being for commercial purposes, which have the characteristics of other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8) Derivative instruments for the transfer of credit risk;

(9) Financial contracts for differences;

(10) Options, futures, swaps, forward rate agreements and any other derivative contracts relating to climatic variables, freight rates or inflation rates or other official economic statistics that must be settled in cash or may be settled in cash at the option of one of the parties other than by reason of default or other termination event, as well as any other derivative contracts relating to assets, rights, obligations, indices and measures not otherwise mentioned in this Section, which have the characteristics of other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having regard to whether, inter alia, they are traded on a regulated market, OTF, or an MTF;

(11) Emission allowances consisting of any units recognised for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Directive 2003/87/EC (Emissions Trading Scheme).

▶ 전자화폐토큰 (Their value by referencing only on fiat Currency, §9)

→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함.
→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E-money Token”이나, “electronic money Token”이라 지칭
→ 단, 전자화폐토큰은 “신용기관” 또는 “전자화폐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고, 고객의 상환청구에 대해 언제든지 응할 수 있어야 함.

▶ (적용예외 1) 기타암호자산

■ MiCa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 충분히 분산화 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채굴되는 코인(BTC, ETH 등등)
- ◆ MiFID II의 규제 대상이 아닌 NFT(Non fungible Token)

▶ (적용예외 2) 중앙은행 및 공공기관이 (방법 무관) 발행한 암호자산 및 제공하는 화폐 관련 서비스는 본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5a)

■ EX)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hapter 3. 암호자산 생애주기(Life Cycle)



▶ 전자화폐토큰 (Their value by referencing only on fiat Currency, §9)

예외) 단, 법적 안정성을 위해 “기 운영중인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백서공표의무” 및 “기타요건”이 면제됨.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제외)

■ 암호자산의 발행자: 자연인 혹은 (중앙화 된) 법인 (§13, 13a)

■ 발행요건

1) 발행자의 본점 및 지점 소재지가 속한 관할국가의 “**인가(Authorisation)**”

※ 단, 승인 요청자는 **법인이어야 함**.

※ **인가 면제조건**: 암호자산이 적격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개되어 “**적격투자만 토큰의 보유**”가 가능한 경우

2)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요건**”을 구비한 자

3) “**지정된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두지 않아야 함.

■ 관계당국 필수 제출(통지)자료: 1) 암호자산 백서(Whitepaper), 2)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 암호자산 백서

(정의) 암호자산백서라 함은 프로젝트의 “**최소 공시 의무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 **백서는 발행하는 암호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백서의 최소 구성요소 ¹⁸		
	주요 내용	예시
파트 A	발행자에 관한 일반 정보	발행자 명칭, 주소 등
파트 B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	프로젝트 또는 암호자산의 명칭, 암호자산의 발행 목적, 서비스의 특징, 자금사용계획 등
파트 C	암호자산의 공개 & 암호자산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승인에 관한 정보	암호자산의 발행가격, 거래 승인여부, 모집금액
파트 D	암호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	매수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 세부사항
파트 E	기반기술에 관한 정보	분산원장 기술 및 인센티브 매커니즘
파트 F	리스크	암호자산에 대한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에 관한 내용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정의) “**현재의 투자자**” 혹은 “**잠재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백서 혹은 프로젝트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8 European Commission. (2018. 6. 30.).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 and amending Directive (Annex I)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최소요건

1.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수록된 정보가 **공정하고 명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함.**
2.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수록된 정보가 **암호자산백서에 수록된 정보와 일치**해야 함.
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는 암호자산백서가 **공표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동 토큰 발행자의 **웹사이트 주소**를 표시해야 함.
4. 발행 이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발행자의 **웹 사이트에 공표**해야 함.

▶ 암호자산 유통(승인, Admission)방법

■ 암호자산 공개(Initial Offering)

(정의) **“암호자산 공개”**란 암호자산에 대한 미래의 보유자 및 고객의 매수 결정을 돕기 위해 이들에게 형식 및 수단을 불문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공개의 조건 및 공개되는 암호자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시하는 커뮤니케이션

(효과) 발행적격을 만족한 자는 “공중을 대상으로 자금 모집”이 가능함.

■ 암호자산거래소 거래승인 (IEO, Listing)

(정의) **“암호자산거래소 거래승인”** 암호자산거래소플랫폼에 의한 거래의 승인

(효과) 발행적격을 만족한 자는 "거래소를 통하여 암호자산의 거래가 가능함.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승인된 경우 **“유럽 전지역에서 유효”**

▶ 토큰-개별 발행요건

▶ 사용목적의 토큰 (유틸리티 토큰)

■ (백서) 공개 후 모집가능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하며, 해당 내용이 백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 (백서) 백서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검토 및 기재되어야 한다.

■ (에너지 효율) 만일 컨센서스 중 PoW 모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평가”**

■ (모집 결과) 공개 기한 종료 **16영업일** 이전에 웹사이트에 공개(ICO)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 (환불조건) 암호자산 공개 기한 종료 일 이전, 약정 철회 시 **“14일 이내”**에 환불요구에 응해야 함.

■ (예외) 관계당국의 “인가”와 “백서”의 작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 (유틸리티 토큰)

- 1) 토큰의 소유자가 발행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거나, 무한분할 불가능한 자산
- 2) 암호자산 공개 이후 유로화 환산 금액이 “1,00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지급결제목적의 토큰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인가의 절차		
인가신청	발행자 ↓ 관계당국	1. 자본금 또는 의결권 “2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2. 프로젝트 운영과정에서 구성할 “준비자산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3. 프로젝트 운영 과정에서의 준비자산 운용 방침이 있는지 여부 4. 프로젝트 운영 과정에서 “준비자산 커스터디 ¹⁹ 방침”이 있는지 여부
인가 신청 평가	발행자 ↓ 관계당국 ↓ 유럽증권시장감독청 ↓ 유럽중앙은행	1. 인가 신청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발행자 평가 (발행자 ↔ 관계당국) 2. 평가 이후 즉시 발행자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은행 대상으로 인가 “결정안 제출” (관계당국 ↔ 발행자, 유럽시장감독청/은행) 3. 유럽중앙은행, 시장감독청은 인가신청서 접수 시점 기준 2개월 이내로 관계당국에 대해 “인가여부 제출” (유럽시장감독청/은행 → 관계당국)
인가 승인/거절	중앙기관 ↓ 발행자	1. 관계당국은 중앙기구로부터 의견 접수 후 6주 이내 인가 여부 판단 후 통지 2. (승인) 관계당국의 별다른 이의 없을 경우 3. (거부) 해당 토큰이 통화주권에 위협을 끼치거나, 재무적인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

※ 자산준거토큰은 “관계당국 → 중앙기구 → 관계당국”의 “3단계 검토 절차”를 거침 (최대 6개월)

◆ (예외) 관계당국의 인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

- 1) 암호자산 공개 이후 발행한 토큰의 유로화 환산 금액이 12개월 기준, “5,00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2) 신용기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²⁰

■ (승인효과) 승인 시 유럽연합 “전역에서 공개” 및 “암호자산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¹⁹ 국내법상 관리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탁업 등으로 번역될 수 있음.

²⁰ Directive 2013/36/EU 8조

■ 전자화폐토큰

◆ 인가절차

- 1) 전자화폐토큰이 유로지역 금융안정 및 통화주권에 위협을 미치지 여부 (유럽중앙은행)
- 2)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 인가 여부 결정 및 5영업일 내에 신청인에게 해당 결과를 통지 (유럽중앙은행 → 발행자, 신청인)

◆ (예외1) 관계당국의 인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

- 1) Directive 2009/36/EU 제2조 5항 4호~23호에 따라 신용기관 인가를 받은 경우
- 2) Directive 2009/110/EC 제2편 제3편에 따른 전자화폐기관 요건 충족 시

◆ (예외2) 관계당국의 인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

- 1) 암호자산 공개 이후 발행한 토큰의 유로화 환산 금액이 12개월 평균 “5,00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시

■ (승인효과) 승인 시 유럽연합 “전역에서 공개” 및 “암호자산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발행 암호자산의 운영

▶ 공통사항

■ (소비자 보호) 발행 이후 소비자 보호 법률의 적용이 필요

◆ Directive 93/13/EEC²¹

◆ Directive 2005/29/EC²²

◆ Directive 2011/83/EU²³

■ (손해배상) 운영과정 중 백서의 내용과 다른 운영에 따른 계약위반이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 발행자는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 사용목적의 토큰

■ (수정) 백서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수정사유를 포함하여 영업일 7일 전 웹사이트 및 관계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²¹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1993L0013>

²²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05L0029>

²³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1L0083>

▶ 지급결제목적의 토큰

■ 공통사항

- ◆ 지급결제목적의 토큰의 보유 시, 토큰의 발행자 또는 암호자산거래사업자 등에 의해 “**보유자들에 대해 이자가 지급되어서는 안됨**”. (§41)
- ◆ 중요 지급결제목적의 토큰으로의 분류

■ 자산준거토큰

◆ 공시의무

주기) 자산준거토큰 발행자는 “**최소 3개월**” 간격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31)

(추진방향) 자산준거토큰 운영과정에서 “**현재의 및 잠재적 이해관계자 간 이해상충을 식별**”하여 공시 정책을 지속 제안하여야 함. (§ 33)

◆ 지배구조(자기자본 요건 포함)

(자기자본) 자산준거토큰 발행자는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가. 350,000유로

나. 평균 준비자산 금액의 2%
(과거 6개월 일별 준비자산 금액의 기중평균금액)

다. 전년도 고정간접비의 25%

(최소 의결권) 발행자는 지속적으로 총 “**의결권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준비금의 관리

원칙) 자산준거토큰의 사업 외 손실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커스터디 정책**”을 마련 해야함. (§ 38)

가. 준비자산이 암호자산인 경우,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

나. 암호자산 외 준비자산에 대해서는 신용기관

(보관) 발행자의 고유자산과 준비자산을 “**분리 보관할 것.**”

(채권관계) 준비자산이 담보, 질권, 압류 등으로 “**제한**”되지 않을 것.

(유동성) 발행자는 토큰 보유자의 상환청구시 즉시 상환할 수 있는 “**높은 유동성을 보유할 것.**”

(커스터디 기한) 토큰 발행을 통해 수취한 준비자산은 모집 후 “**5일 이내 커스터디 할 것.**”

◆ 준비자산의 운용

(원칙) 자산준거토큰의 “준비자산 및 투자자산의 매매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방법”으로 운용해야 함. (§ 37)

(투자자산 및 이익의 귀속) 담보되는 자산준거토큰의 보호를 위해 “시장리스크, 집중리스크, 신용리스크가 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여야 함. 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은 토큰 “발행자에게 귀속”되어야 함. (§ 39)

(투자상품의 커스터디) 준비자산의 투자로 획득한 금융상품은 커스터디를 통해 관리되어야 함.

(상환) 보유자의 상환 요청 시 발행자는 “2영업일 이내 상환”할 수 있어야 함.

◆ 보고 의무

(시장동향) 자산준거토큰과 관련된 시장 동향에 대한 증권시장감독청에 대한 보고

◆ 준비금의 관리

(지정 분류) 중앙기관은 다음의 요건 중 “3개 이상을 만족하는 자산준거토큰”의 경우 “중요 (감독대상) 자산준거토큰으로 분류”해야 한다.
 - 자산준거토큰의 “고객/자본/거래량/회원국의 수/준비자산 규모”가 기준을 초과할 때.

(자발적 분류) 자산준거토큰의 발행자는 “최초 인가 시점”에 “중요 (감독대상) 자산준거토큰으로의 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승인의 통지)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준거토큰이 중요 (감독대상) 자산준거토큰으로 분류되는지를 “발행자와 관계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추가 의무) 중요 자산준거토큰으로 분류된 발행자는 “리스크 관리 목적”의 추가의무를 부담한다.

■ 전자화폐토큰

- ◆ (운영) 전자화폐토큰 발행자는 보유자에게 2영업일 이내에 상환 수수료를 포함하여 금전을 상환해야 한다.
- ◆ (운용) 담보되는 자산준거토큰의 보호를 위해 “시장리스크, 집중리스크, 신용리스크가 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여야 함. 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은 토큰 “발행자에게 귀속”되어야 함.

◆ 중요 전자화폐토큰으로의 재분류

(지정 분류) 중앙기관은 다음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전자화폐토큰”의 경우, “중요 (감독) 대상 전자화폐토큰으로 분류”해야 한다.

- 자산준거토큰과 같은 조건을 가짐.

(자발적 분류) 전자화폐토큰의 발행자는 “최초 인가 시점에 상기 조건 중 3개 이상을 만족할 경우, 중요 (감독 대상) 전자화폐토큰”으로의 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 암호자산의 중단

▶ 인가 취소

- 관계당국은 “운영 중단”, “파산”, “인수” 및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²⁴

■ 유틸리티토큰: 중단과정에서 별도의 인가 취소 절차를 요하지 않음.

■ 자산준거토큰

◆ 예시

1. 발행자가 인가승인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발행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3. 발행자가 도산법에 따라 “질서있는 업무축소(Orderly Wind-down)” 계획에 돌입한 경우
4. 발행자가 명시적으로 인가를 포기했거나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5. 발행자의 자산준거토큰이 유럽 통화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결과) 준비자산 매각대금을 자산준거토큰 보유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자화폐토큰

◆ 신용기관 인가를 상실한 경우

◆ (결과) Directive 2009/110/EC에 준하는 청산절차

²⁴ 발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인가”를 요하기 때문에, 인가의 취소는 “운영 중단”, “파산”, “인수” 등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Chapter 4. 암호자산 사업자 규제

□ 암호자산 사업자 분류

암호자산업자 종류별 최소자본금 규모 ²⁵		
	암호자산 서비스 유형	최소 자본금
분류 1	제3자 대행 암호자산 거래	50,000유로
	암호자산 자문 제공	
	암호자산 사모발행	
분류 2	커스터디 서비스	125,000유로
분류 3	암호자산과 법화 간 교환	150,000유로
	암호자산간 교환	
	암호자산거래 플랫폼	

※ 자본금 수준에 따라 중복 적용 (예시: 분류2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분류 1을 수행할 수 있음)

▶ 암호자산 서비스제공자

■ 암호자산서비스의 업종: **‘금융서비스’**.

■ 암호자산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회원국에 소재”**하고 **“회원국의 인가”**가 필요함.

※ 단, 유럽시민의 요청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인가가 필요함.²⁶

■ 암호자산서비스 사업자의 영업 요건

◆ 인가 **불요(不要)** 대상자

→ 기존 **금융시장인프라 운영자, 신용기관, 중앙거래당사자, 중앙예탁기관** 등

◆ 인가의 효과

→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가 및 감독권한은 개별 국가에서 가능하며, 이는 전 유럽에 적용된다. (§ 52)

◆ 설비요건

→ KYC/AML을 위한 ISMS

→ 내부통제 및 리스크 평가 매커니즘

→ 시장조작행위 탐지 시스템

²⁵ European Commission. (‘22. 6. 30.).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 and amending Directive (Annex III)

²⁶ 예를 들어, 유럽인이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거래하기를 원하는 경우

◆ 인가의 절차

인가의 절차	
인가신청	<div style="text-align: center;"> <p>신청자</p> <p>↓</p> <p>관계당국 유럽증권시장감독청</p> </div> <p>(식별) 인가 신청을 위해서 신청자는 다음의 세부사항을 중앙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 2. 신청자의 법적 지위 3. 신청자의 정관 4. 암호자산서비스 유형에 따른 운영계획 5. 지배구조체계에 대한 설명 6. 내부통제 매커니즘 7. 조세회피/자금세탁 위험국에 본점 혹은 지배주주가 있지 않다는 여부
인가 신청 평가 승인 & 거절	<div style="text-align: center;"> <p>관계당국 유럽증권시장감독청</p> <p>↓</p> <p>신청자</p> </div> <p>(평가) 인가 신청 접수 후 2개월 이내 인가승인여부 확인 (등록) 승인 시 관계당국은 유럽증권시장감독청에 인가 여부 통지 (승인거절) 평가 후 필요 서류가 없을 시 인가 거절 가능</p>

■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 등록부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에 관한 등록부를 일괄 관리한다. (§ 53)

□ 암호자산 사업자의 운영

	암호자산 서비스 유형
건전성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최소자본 금액 유지 ● 전년도 고정간접비의 1/4 ●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계약기간이 1년 이하일 것. - 취소통지기간이 최소 90일일 것. - 유럽연합에서 운영중인 보험회사의 상품일 것. - 당 보험사가 특수이해관계가 없을 것.
기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실제 운영자가 의결권의 5% 이상을 “지속적이고”,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고객확인(KYC/AM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설비를 갖추는 것. ● 조세회피/자금세탁 고위험국이 사업운영법인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할 것.²⁷
암호자산 자금의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호자산서비스 이용자는 고객의 자금을 신용기관 혹은 중앙은행에 전액 예치할 것.

²⁷ Directive (EU) 2015/849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 분류에 따른 개별 운영방침 (제3조 1항 (9))

1. 제3자를 대신한 암호자산의 커스터디 및 관리
2. “암호자산거래플랫폼”의 운영
3. 암호자산과 법화의 교환
4. 암호자산과 다른 암호자산의 교환
5. 제3자를 대신한 암호자산의 주문 실행
6. 암호자산의 사모발행
7. 암호자산의 이전
8. 제3자를 대신한 암호자산 주문의 접수 및 전송
9. 암호자산에 관한 자문 제공
10. 암호자산과 금융투자상품의 교환
11. 암호자산 포트폴리오의 제공

■ 제3자를 대신한 암호자산의 커스터디 및 관리업

(고객 주문관리) 커스터디 및 관리업자는 고객 명의의 “포지션 등록부”를 관리해야 한다.

(커스터디 정책 수립) 커스터디 및 관리업자는 “암호자산 관리를 위한 커스터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과실에 따른 책임) 커스터디 및 관리업자는 “과실”로 인한 “고객 암호자산의 분실 혹은 유실에 대해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고객 자산 분리운용) 커스터디 및 관리업자는 “고객의 자산과 회사의 자산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암호자산거래플랫폼의 운영업

(거래시스템) 운영업자는 “거래의 승인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자금유용방지) 운영업자는 고객의 재산을 “자신의 계산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거래정보 공개) 운영업자는 거래관련 “공개가능 정보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운영업자는 “거래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유럽증권시장감독청에 보고”해야 한다.

(규제 준수) 운영업자는 법률에 부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외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거래내역 보존) 운영업자는 거래 관련 내용을 5년 유지하여야 한다.

■ 암호자산과 명목화폐 또는 암호자산과 교환업

(계약) 교환업자는 암호자산에 관하여 확정가격 제안가격의 결정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정보제공) 교환업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자산-화폐, 자산-자산을 교환 시 거래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 제3자를 대신한 암호자산의 주문 실행업

(**신의성실**) 실행업자는 최고최선으로 고객의 주문을 실행하여야 한다.

(**프로세스**) 실행업자는 효과적인 실행 프로세스를 지속 제안하고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암호자산의 사모발행업

(**모집**) 사모발행업자는 자금의 모집과정에서 방식, 최소매수금액, 거래수수료 등 거래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제3자를 대신한 주문의 접수 및 전송업

(**신의성실**) 전송업자는 고객의 주문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립성**) 전송업자는 고객의 주문을 대리함에 있어 특정 서비스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